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Contents

회계정보

-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및
테마심사·감리 결과 분석
- 상장회사 단순 회계위반
발견시 신속한 수정 필요

세무 및 법률정보

-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 11 월 30 일(월)
- Tax Tips: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
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
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2020년 11월호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2020년 11월호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 사례 추가 공개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해 2015~2017년 감리 지적사례 34건을 추가로 공개하고, 지적사례 DB를 용이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포탈 (acct.fss.or.kr)의 메뉴 및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0. 8. 20]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 종전에는 지적사항과 시사점만 간략히 안내하였으나, 2019년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DB化^{*1}하여 상세히 공개^{*2}

*1 지적사례에 아래와 같이 번호체계를 부여하여 DB화

FSS지적사례발표기관/2008지적사례를 발표한 년월-OO지적사례고유번호

*2 사례별로 ①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②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③지적근거 및 판단내용, ④감사인의 감사절차 미흡사항, ⑤시사점으로 구성되며, 쟁점 분야, 관련 회계기준서, 결정연도, 회계결산일을 기재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2. 회계감리 지적

- 사례 추가 공개 2019.12월에 최근 2년간(2018~2019년) 감리지적사례 29건을 발표한 데 이어서
금번에는 추가로 3개년(2015~2017년) 지적사례 34건을 공개
- 주요 지적내용은 조선업, 건설업 등 수주산업의 수익인식 등 매출·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평가 오류 6건, 대손충당금 등 설정 관련 오류 3건, 유·무형자산 등 과대계상 3건, 주식 미기재 3건, 기타 7건임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

- (매출·매출채권·수익인식 등)^①진행 중인 공사에 소요되는 총예정원가가 변동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사진행률(=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 및 매출(=공사수익×공사진행률) 왜곡, ^②실제 제조·가공 및 이동 사실이 없는 중고제품을 관계회사에 인도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처리한 뒤 매출로 인식

2020년 11월호

【참고】 주요 감리지적사례 -계속

-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 ①전환우선주에 내재된 전환권을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면서 공정가치를 산정할 때 평가오류가 발생하여 해당 부채를 과소계상, ②해외 피투자회사의 매출을 과소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은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이익을 과소계상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
-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 손상이 발생한 장기매출채권에 대해 개별채권별로 회수가능액을 평가하지 않고 경과기간별 대손율을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유.무형자산 등 관련) 투자자산(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의 시세 하락 등 손상징후가 명확했음에도 가치 하락분을 반영하지 않아 해당 자산을 과대계상

※ 2015~2017년 감리지적사례 목록 및 예시

● 매출·매출채권·수익인식 등 관련(12건)

1. FSS/2008-01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2. FSS/2008-02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3. FSS/2008-03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4. FSS/2008-04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5. FSS/2008-05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6. FSS/2008-06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7. FSS/2008-07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 인식 오류
8. FSS/2008-08 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계상
9. FSS/2008-09 공사수익 과대계상
10. FSS/2008-10 수익 기간귀속 오류
11. FSS/2008-11 공사수익 오류
12. FSS/2008-12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 재고자산 관련(1건)

1. FSS/2008-13 재고자산 허위계상

● 지분투자, 금융상품 등 관련(6건)

1. FSS/2008-1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2. FSS/2008-15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3. FSS/2008-16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미인식

2020년 11월호

4. FSS/2008-17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5. FSS/2008-18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6. FSS/2008-19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 유.무형자산 등 관련(3건)

1. FSS/2008-20 유형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2. FSS/2008-21 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3. FSS/2008-22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3건)

1. FSS/2008-23 장기성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2. FSS/2008-24 소송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3. FSS/2008-25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기타자산, 부채, 자본 관련(2건)

1. FSS/2008-26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2. FSS/2008-27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관련(3건)

1. FSS/2008-28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2. FSS/2008-29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주석 미기재
3. FSS/2008-30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기재 오류

● 연결재무제표 관련(2건)

1. FSS/2008-31 연결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2. FSS/2008-32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 기타 지적사항(2건)

1. FSS/2008-33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정분류 오류
2. FSS/2008-34 자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2020년 11월호

3. 회계포탈 검색 기능 개선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의 메뉴 및 검색 기능을 개선

- 정보이용자가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등 관심사항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비교할 수 있도록 ①게시물 항목과 ②검색창을 개선
- 기업이 감리지적사례를 쉽게 찾아 감독당국의 판단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참고】 회계포탈 검색 기능 개선 화면

◎ 심사 · 감리지적사례

HOME > 회계감리 > 심사 · 감리지적사례

자료 검색

전체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년도

총 40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번호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년도	첨부파일	조회수
40	FSS1912-1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재고자산 평가손실 기업회계기준서 제 실 1002호	2018		4	

자료 검색

쟁점분야

재고자산

Search

총 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번호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년도	첨부파일	조회수
4	FSS/2008-13	재고자산 허위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호	2017년		4
3	FSS/1912-3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호	2019년		6
2	FSS/1912-2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재고자산 평가손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호	2019년		4
1	FSS/1912-1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재고자산 평가손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2호	2018		10

4. 향후계획

감리지적사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IFRS 전면시행 첫해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지적사례 DB도 공개하는 한편

-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연도 주요 감리지적사례를 발표하여 감리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

* (2021년 1분기) 2020년도 주요 감리지적사례 공개

(2021년 3분기) 2011 ~ 2014년도 주요 감리지적사례 공개

2020년 11월호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및 테마심사·
감리 결과 분석 (상장회사 유의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월)에 따라 고의가 아닌 단순 회계
오류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거쳐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 이슈에 대해 오류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

[출처: 금융감독원, 2020. 11. 4]

◆ (사전예고 효과) 테마심사 대상으로 사전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해 당해 연도(T년)에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상장회사 등의 비율이 점차 상승함

* 사전예고한 회계오류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13년 도입

o '16.12월 ~ '20.5월 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한 상장회사 등을 대상 (총 549건)
으로 오류 수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 120건(21.9%)이 테마심사 대상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직접 관련한 오류사항을 수정
*하였으며, 최근 들어 당해 연도(T년) 수정비율이 점차 상승

* 회계이슈 발표 당해 연도(T년) 또는 다음 연도(T+1년)까지 사전예고 회계이슈 내용
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

◆ (심사·감리결과) 테마심사·감리 지적사항은 고의적인 위반보다는 과실·중과실에 의한
위반이 대부분(95.8%)

o '14년 이후 테마심사·감리 결과 종결처리 된 143사 중 회계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48사(33.6%)로

- 고의성 있는 회계위반보다는 위반동기가 과실(26사, 54.2%) 및 중과실(20사, 41.6%)
이 대부분(95.8%)을 차지

◆ (상장회사 등 유의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월)에 따라 고의가 아닌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거쳐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o 상장회사 등은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 오류여부를 검토하여 신
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

o 한편, 금감원의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위반시에는 감리를
통한 중조치가 가능함

2020년 11월호

1. 테마심사·감리 (배경)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3년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 대상 사전예고제도 도입
- 제도 개요
- 사전예고한 회계오류 취약분야에 대해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한정하여 집중 점검
 - (경과) '13년말부터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발표(붙임1 참조)하였고, '19년부터는 회사·감사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을 전년도 6월로 단축
 -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된 '19.4월부터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자진수정을 통해 정보의 신속한 공시를 유도 중
2. 회계이슈 사전예고 효과 분석
- (효과성 판단기준) 회계이슈 사전예고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T년) 또는 다음 회계연도 정기보고서 제출일(T+1년)까지 과거 감사보고서 등에 수정내용을 반영
- (기간별) '16.12월 이후 규모배수 1배 이상 회계오류를 수정한 회사 549사* 중 120사(21.9%, 126건)가 T년 또는 T+1년까지 회계이슈 관련 수정사항을 반영

* 유가증권 137사, 코스닥 296사, 코넥스 39사, 사업보고서 77사

규모배수 1배 이상 회계오류 수정 회사 현황

감사보고서(분·반기보고서) 정정		이익잉여금 조정 (자본변동표) ^{*1}		전기오류수정손익 인식 (포괄손익계산서) ^{*2}		합계
4%이상	1%이상~4%미만	4%이상	1%이상~4%미만	4%이상	1%이상~4%미만	
190	146	93	90	6	24	549

*1 전기오류수정사항 등을 자본변동표상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거나 T년말 이익잉여금과 T+1년초 이익잉여금이 차이나는 법인

*2 전기오류수정사항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익(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식한 상장법인

2020년 11월호

- 이 중 T년에 반영한 건수는 58건(46%), T+1년에 반영한 건수는 68건(54%)로서, T년 및 T+1년 수정 비율이 유사
 - 다만, '18.3월까지는 T년 반영 비율이 32%(8건/25건)에 불과하였으나, '18.4월 이후부터는 T년 반영 비율이 49.5%까지 상승(50건/101건)하는 등 당해 연도 수정비율이 점차 상승
- (이슈별) '16년말부터 회계이슈 사전예고 총 4회 중 개발비 등 무형자산(50건), 비 시장성 자산평가(17건), 수주산업 등 장기공사계약(14건) 관련 수정이 다수
 - 상기 회계이슈는 반복적 심사대상 선정으로 수정빈도가 높은 편
 - 특히,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테마감리 결과 감독지침 등을 통해 자진수정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에 따라 오류수정 급증

사전예고 회계이슈 관련 재무제표 수정 현황(건수)

사전예고일	회계이슈	T년	T+1년	합계
2016.12.22	① 비시장성 자산평가	1	5	6
	② 수주산업 공시	5	5	10
	③ 반품·교환 회계처리	-	2	2
	④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	1	11	12
	소계	7	23	30
2017.12.15	① 개발비	4	10	14
	②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	-	-
	③ 사업결합	-	1	1
	④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1	3	4
	소계	5	14	19
2018.12.10	①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	6	2	8
	②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	3	7	10
	③ 비시장성 자산평가	2	9	11
	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31	5	36
	소계	42	23	65
2019. 6.25	① 新리스기준서	-	-	-
	② 총당부채·우발부채	-	-	-
	③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4	-	4
	④ 유동·비유동 분류	-	1	1
	소계	4	1	5
총합계		58	61	119

2020년 11월호

-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검리 지적률(43.0%)*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

* '17년 이후 표본감리 선정 대상 평균 지적률(회계이슈 제외): 43.0%(40건/93건)

- 다만, '16년은 회계이슈 외 타 계정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18년은 개발비에 대한 일제점검 수행에 따라 지적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선정 연도별 테마심사·감리 결과

(단위 : 사, %)

감리 결과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합계
무혐의 종결	16	16	8	33	12	10	95
조치완료(A)	4	4	11	16	12	1	48
종 결(B)	20	20	19	49	24	11	143
진행중	-	-	1	1	6	9	17
합계 (지적률:A/B)	20 (20.0)	20 (20.0)	20 (57.9)	50 (32.7)	30 (50.0)	20 (9.1)	160 (33.6)

□ (주요 위반유형) 48사에 대해 총 108건*의 위반사항 지적·조치

* 한 회사가 다수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지적·조치 건수(108건)가 회사 수(48사)보다 많게 나타남(붙임2 참조)

- 계정과목별로 볼 때, 매출·매출원가 등 수익인식 관련'(총 23건), 개발비 관련(14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9건), 대손충당금 과소(5건)·부채 과소(5건) 등의

* 매출·매출원가 동시 지적 9건(총 18건), 매출 단독 지적 2건, 매출원가·재고자산 단독지적 3건으로, 이 중 진행기준 관련 지적은 총 8건임

- 주요 주석사항으로 특수관계자 거래(8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미기재 등 총 20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

2020년 11월호

- 아울러,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되어 지적된 회사는 36사로서, 지적·조치 완료 회사(48사) 중 75.0% 수준

- 이 중 무형자산(52.4%), 장기공사계약(33.3%), 비시장성자산평가(35.7%)와 관련 한 연관지적 사례가 높은 비율

□ (위반동기) 회사(48사)의 위반동기는 과실(26사, 54.2%), 중과실(20사, 41.6%), 고의(2사, 4.2%) 順

- 48사의 세부 항목별(108건) 위반동기는 고의 6건(5.6%), 중과실 48건(44.4%), 과실 54건(50.0%)

- 전체 위반회사(48사) 중 심사 결과 경조치된 1사*를 제외한 47사에 대한 조치 결과, 감사인의 위반동기는 과실 29사(61.7%), 중과실 18사(38.3%)로 나타남(고의 없음)

* 新 외감법규에 따라 '19.4월부터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 결과, 위반내용이 중대하지 않아 회사에 대한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로 종결

4. 시사점 및 유의

사항 □ (시사점) 사전예고 회계이슈와 관련된 회계오류 수정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 기업들이 신속하게 수정하는 비율(T년 수정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등 회계이슈 사전예고제도가 안착

- 향후에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발굴 및 테마심사 대상으로 예고함으로써 회계오류 발생을 적극 억제할 예정

□ (유의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19.4월)으로 단순 회계오류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테마심사 대상으로 공표된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오류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자진수정·공시할 필요

- 금감원의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위반시에는 감리를 통한 중조치가 가능

- 한편, 취약기업 등*은 회사 내부감시기구 및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재무제표 작성 역량을 강화할 필요

* 유가증권시장 대비 코스닥·코넥스 소속 중소기업의 위반사례가 다수

2020년 11월호
불임1

테마심사·감리 대상 사전예고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취지)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점점검 대상 회계이슈를 전년도에 사전예고한 후 동 회계이슈에 대한 종점점검(테마감리)을 실시
 - 이는 회계오류 취약분야를 미리 예고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한 집중 점검으로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 (경과) 금감원은 '13년말부터 매년 다음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미리 예고하는 방식으로 7년간 32개 이슈를 선정·발표
 - 아울러, '19년부터는 회사·감사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회계이슈 사전예고 시점을 전년도 6월로 단축
 -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운영된 테마감리를 심사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경미한 위반은 수정권고·자진수정을 통한 올바른 정보의 신속한 공시를 유도하고 있음

* 재무제표 심사제도(외감규정 §23) : 최근 공시자료 중심의 심사로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 후 경조치로 종결하되, 반복적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

테마심사·감리 절차
사전예고

종점점검 회계이슈
선정·공표
(심사 전년도 6월)

심사 대상 선정

회계이슈별
심사대상 회사 선정

심사 실시

회계이슈별 집중점검
(당해 이슈에 한정,
'19년 이후 심사방식)

심사 종결

경미한 위반의 경우
수정권고를 거쳐
경조치로 종결

감리 전환

수정권고 미이행,
중요 또는 반복적 위반

2020년 11월호
2. 테마심사·감리 대상 회계이슈

심사·감리연도 (회계이슈 예고일)	테마심사·감리 대상 회계이슈
2014년 (`13.12.17)	①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②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③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④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2015년 (`14.12.22)	①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②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기재의 적정성 ③ 영업이익·이자비용 산정의 적정성 ④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6년 (`15.12.23)	①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②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③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의 적정성 ④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17년 (`16.12.22)	①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② 수주산업 공시의 적정성 ③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신주인수권 등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8년 (`17.12.15)	①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②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③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9년 (`18.12.10)	① 新수익기준서에 따른 수익인식의 적정성 ② 新금융상품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적정성 ③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④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2020년 (`19.6.25)	① 新리스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 ②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및 관련 주석 적정성 ③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등 관련 수익인식 적정성 ④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21년 (`20.6.19)	① 재고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②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의 적정성(영업권, 개발비 제외) ③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④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2020년 11월호
불임2
테마심사·감리 지적사항 및 위반동기

* 위반동기는 각 세부항목별로 위반연도별 위반금액 및 위반동기를 합산하여 조치양정 기준 상 최종 조치수준(고의·중과실·과실, I ~ V 단계)으로 확정

구분	세부 유형	지적수	고의		
			중과실	과실	과실
A유형	1. 매출채권, 매출 과대(과소)	11	1	6	4
	2. 재고자산, 매출원가 과대(과소)	12	2	6	4
	3.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9	-	7	2
	4. 고정자산 과대	-	-	-	-
	5. 개발비 과대계상	14	-	3	11
	6.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3	-	1	2
	7. 미지급비용, 차입금, 충당부채 등 부채 과소	5	-	1	4
	8.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5	-	3	2
	9. 자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 과소계상	-	-	-	-
	10. 기타손익 과대(과소)	3	-	-	3
소계		62	3	27	32
B유형	1. 자산부채 과대과소	3	-	2	1
	2. 수익비용 과대과소	7	1	4	2
	3. 영업현금흐름	2	-	-	2
	4. 신 규정 상 유동·비유동 분류	1	-	-	1
	5. 신 규정 상 영업·비영업 손익 분류	1	-	-	1
소계		14	1	5	7
C유형	1. 특관자 거래	8	-	4	4
	2. 지급보증, 담보제공	7	-	5	2
	3. 소송 등 기타 우발부채	-	-	-	-
소계		15	-	9	6
D유형	1. 계정재분류	6	-	3	3
	2. 신 규정 전 유동·비유동 분류	4	-	3	1
	3. 신 규정 전 영업·비영업손익 분류	-	-	-	-
	4. 기타 주석 미기재 등	5	-	1	4
소계		15	-	7	8
E.기타	외부감사 방해 등 외감법규 위반	2	2	-	-
총합계		108	6	49	53

2020년 11월호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 도입 취지 및 설계
방안**
제도 도입 취지

□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례 >

	개인사업자 甲	개인유사법인 A (甲 지분 100%)
소득(=과세표준, ①)	5 억 원(부동산 임대료)	
세율	소득세율 6~42%	법인세율 10~25%
세부담(②)	1 억 7,460 만 원	8,000 만 원
세후소득(①-②)	3 억 2,540 만 원	4 억 2,000 만 원

▶ 법인 전환 후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남은 금액을 배당 없이 유보하여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로 처리

○ 지난 10년 간 전체 법인 중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의 수
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구 분	'10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가동법인(만 개)	47	67	73	77	82	87
1인 주주법인(만 개)	5	16	19	22	25	28
비중(%)	10.6	23.9	26.0	28.6	30.5	32.2

○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최고 42%)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최고 25%)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2020년 11월호

제도 개요

□ 금번 제도는 적극적·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규정하여 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①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法)

-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은 사실상 그 주주가 의사결정을 지배하여 법인의 경제적 실질이 그 주주와 동일하다고 판단

< 사례 >

▶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일본은 지분을 50%로 규정**

- (미국)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

(일본)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

②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法)

-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유보는 사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인정

< 사례 >

▶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 원이 발생한 법인이 **3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 원이 발생한 법인이 그 간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자본이 50억 원인 경우

→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③ 그 초과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은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부채상환·고용·R&D를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余)

*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체수입의 일정수준(예: 50%) 미만인 법인

2020년 11월호

- 적극적으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4가지 지출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

< 사례 >

① (투자) 제조업체 B 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0 억 원 중 주주에게 20 억 원을 배당한 후 2년 후 구입할 기계장치를 위해 30 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 투자를 위한 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② (부채상환) 도매업체 C 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 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당해연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차입금 3 억 원을 상환한 후 다음연도 상환기일이 도래할 차입금 상환을 위해 2 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 · 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③ (고용) 건설업체 D 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0 억 원 중 주주에게 2 억 원을 배당한 후 매년 직원의 급여로 4 억 원이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2년 간 급여비용으로 8 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 고용을 위한 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④ (R&D) 연구개발업체인 E 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4 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연도 R&D 비용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2 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 R&D를 위한 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축되어 수동적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

< 사례 >

▶ 제조업체 G 법인은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21년도 수입금액이 제조매출 1 억 원, 이자소득 2 억 원 발생(단, '20년도 수입금액은 제조매출 4 억 원, 이자소득 2 억 원),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 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연도 급여비용으로 1 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 G 법인은 적극적 사업법인에 해당 → 고용을 위한 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2020년 11월호

- 즉,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①지분율 요건, 法),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②유보수준 요건, 法),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③유보소득 제외 요건, 令)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며,

< 사례 >

- ▶ (수동적 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법인) 부동산 임대료 수입만 있는 "임대업 A 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4 억 2,000 만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은 경우 →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배당간주금액 2 억 1,000 만 원** **先과세**
- ▶ (경영 활동을 위한 지출이 없는 법인) "기획사 H 법인"은 수입금액이 출연료 20 억 원, 임대료 10 억 원 발생,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0 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투자 · 고용 등을 위한 지출이 없는 경우 →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배당간주금액 10 억 원** **先과세**

- 그 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됩니다.

< 사례 >

- ▶ 건설업체 | 법인은 그 간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누계)으로 10 억 원이 누적되어 있으나, '21년도 사업부진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 ▶ '22년도에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21년도 발생한 결손금이 이월되어 '22년도 과세표준이 0 보다 작은 경우 →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 또한,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사례 >

- ▶ "임대업 A 법인"이 1년 후 실제로 2 억 1,000 만 원을 배당한 경우 → 1년 후 배당시점에 부담하는 **배당소득세 없음**
- ▶ "기획사 H 법인"이 청산하면서 잔여재산으로 20 억 원을 배당한 경우 → 선과세 된 10 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 억 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

2020년 11월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 2020년 11월 30일(월)

종합소득세 중간예
납세액 납부기한 :
11월 30일(월)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11.30.(월)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관할 세무서에서 '20. 11. 2.부터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음.
 - **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중간예납세액은 '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제외대상)을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 없음.
-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가결산 방법에 따라 11.30(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비 개정세법 안내

Tax Tips: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 국세청은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0.30.(금)부터 개통하였습니다.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이 사전에 제공되어 추가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고,
 -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금년도 연말정산 중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1. (과세제외 신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0년 11월호

2. 비과세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비과세 확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연간 2천만→연간 3천만원

- (적용시기)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4.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 급여액 기준이 완화(2,500만→3,000만원 이하)되었습니다.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상향 조정(190만원→210만원) 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20.1.1. 이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세액감면 신설)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
+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적용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0년 11월호
6. (세액감면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현 행	개 정
경력단절 인정사유	임신·출산·육아	'결혼·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업 요건	동일 기업	동종 업종

- (적용시기) '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퇴직연금 합산시 한도)			공제율	
	현 행	개 정			
		50 세 미만	50 세 이상		
5.5 천만원 이하 (4 천만원 이하)	400 만원 (700 만원)	400 만원 (700 만원)	600 만원 (900 만원)	15%	
1.2 억원 이하 (1 억원 이하)					
1.2 억원 초과 (1 억원 초과)	300 만원 (700 만원)		300 만원 (700 만원)	12%	

-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020년 11월호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는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60, 2020.09.04)

(사실관계)

○ 다국적 보험회사인 A법인은 1987년에 한국지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17.6.15. 단독 현금출자로 내국법인인 갑법인을 설립하여 갑법인의 발행주식 3,400,000주 전부를 인수하였음

○ A법인은 2018.1.1. 갑법인에게 한국지사에서 영위하던 보험업과 관련된 계약,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고 갑법인 주식 52,105,798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는바

- A법인 및 한국지사와 갑법인 사이에 체결된 현물출자 계약서에 의하면 A법인이 현물출자인(Transferor)으로 일방 당사자가 되고 갑법인이 피출자인(Transferee)의 지위로 상대방이 되며

- A법인 한국지사는 본사를 위한 업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후 A법인은 2018.3.21. 갑법인의 유상증자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신주 4,824,134주를 한국지사 명의로 전부 인수하였으며

- A법인 한국지사는 2018.3.27. 및 2018.12.31. 자신의 명의로 인수한 갑법인의 주식 전부를 본사에 이전하여 갑법인은 현재까지 A법인의 100% 자회사로서 생명보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바, 갑법인의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음(단위 : 주)

변동일자	합 계	A 법인	A 법인 한국지사	비 고
17.6.15. ~ 18.1.1.	3,400,000	3,400,000	0	
18.1.1.	55,505,798	3,400,000	52,105,798	A 법인 한국지사 현물출자
18.3.21.	60,328,932	3,400,000	56,928,932	유상증자
18.3.27.	60,328,932	55,505,798	4,823,134	주식 본점 이관
18.12.31.	60,328,932	60,328,932	0	주식 본점 이관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영업일체를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한 경우 해당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

2020년 11월호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보험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지점에서 영위하던 보험업과 관련된 계약, 자산 및 부채를 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단독 현물출자하고, 이를 출자받은 내국법인은 승계한 보험업을 현물출자일 이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현물출자자의 대가는 전액 주식으로 외국법인의 지점에게 교부되었다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본점에 전부 이전된 후 해당 본점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는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제4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해외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주한대사관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82, 2020.08.28)

(사실관계)

- A법인은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코로나19 재난 후원 물품지원을 요청받아 공급가액 10,960천원 상당의 환자용 수송침대 20대를 2020.4.22.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기부하였으며
 - 해당 기부물품에 대하여 A법인은 대사관으로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자체적으로 기부자, 기부목적, 기부가액, 기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음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코로나19 재난 후원금품을 지급하고 법정서식이 아닌 대사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현물기부금으로 환자용 수송침대를 기증하고 대사관에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임의로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2020년 11월호

업무소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조직, 인사 전략 / HR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ul style="list-style-type: none">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PI / CRM / Risk Management 등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	---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